

#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5. 12. 2.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

## □ 수정 이유

-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

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,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“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”로 함.
-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“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1. 공적·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
  2.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
  3.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”으로 함
- 안 제13조의 조문 중 “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삭제함.

##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,  
안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
- 안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③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1. 공적·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
  2.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
  3.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
  
- 안 제13조의 조문 중  
“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삭제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6조(임기) ① (생략)</b></p> <p>②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</li> <li>2.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</li> <li>3.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</li> </ol> <p><b>제10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</b></p> <p>①~② (생략) <b>(신설)</b></p> <p><b>제13조(수당과 여비)</b>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『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b>제6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<b>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</b></p> <p><b>제10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적·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</li> <li>2.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</li> <li>3.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</li> </ol> <p><b>제13조(수당과 여비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(삭제)</p>